

「2025년 컬리 임산물 전용관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I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컬리 임산물 전용관 입점 지원
-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임산물 온라인 판로확보
- (지원대상) 임산물 원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필수 조건>

- 임산물 원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참고 1**
-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가 완료된 자

- (운영형태) 컬리 내 기획전 형태로 운영 예정
- (운영일정) 선정 및 상품등록 → 기획전 운영(4월, 9월)
 - * 4월은 기입점업체 대상 기획전 운영, 9월은 기존·신규업체 모두 포함하여 기획전 운영
 - * **컬리 기입점업체도 임산물 전용관 입점을 위해서 반드시 신청 필요**
- (입점형태) 컬리 직매입 형태로 입점

구분	운영 주체	주요 내용
컬리 직매입	컬리	○ 컬리 직매입 형태 의 거래로 판매자가 컬리에 상품을 납품하면 판매 관리부터 배송, 고객 응대까지 컬리가 직접 진행하는 방식 ※ 기획전 신청서를 기준으로 컬리 측에서 선정·진행

II 지원 내용

- (입점 지원) 컬리 미입점 업체의 컬리 사이트 내 입점 지원
- (기획전 운영) 임산물 전용관(기획전) 운영을 통한 상품 노출 지원
- (쿠폰비용 지원) 등록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 발행 지원
- (마케팅 지원) 메인페이지 배너광고 및 기타광고 등 전략적 홍보

Ⅲ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5. 4. 1.(화) ~ '25. 6. 30.(월), 18:00까지
 - (기입점) 4. 1.(화) ~ 4. 14.(월), (신규입점) 4. 1.(화) ~ 6. 30.(월)
- (신청방법) 전자메일로 제출서류 접수(제출 마감시간 엄수)
 - 이메일 : marketing@kofpi.or.kr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02-6393-2563)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1	신청서류	필수	- 신청서, 상품정보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서명 및 날인 필수)
2	사업자 증빙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3	국산 임산물 증빙서류	필수	- 국산 임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산지 증빙서류, 영수증 등
4	품질성적서	필수	- 상품별 잔류농약시험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서 등 *참고 2 ※ 산양삼일 경우, 산양삼 품질검사합격증 ※ 잔류농약시험성적서는 다음의 인증서로 대체 가능(K-FOREST FOOD 지정서, 숲푸드 신고서, 친환경 인증서, GAP 인증서)
5	관련 인증서	해당 시	- 인증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서 사본 제출 ※ K-FOREST FOOD, 숲푸드, 친환경인증, HACPP 인증서 등 - 기업 소개 리플렛 등

- * 제출서류는 각 폴더별로 정리한 후, 참가신청서를 포함한 전체 파일을 zip으로 압축(압축 파일명 : 농업회사법인 ooo(업체명) 후 이메일 제출
- * 컬리 기입점업체는 1. 신청서류 중 상품정보서 제출 불필요, 컬리 내 원산지가 국산으로 명시된 제품은 3. 국산 임산물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가공제품의 경우 4. 품질성적서 제출 불필요

Ⅳ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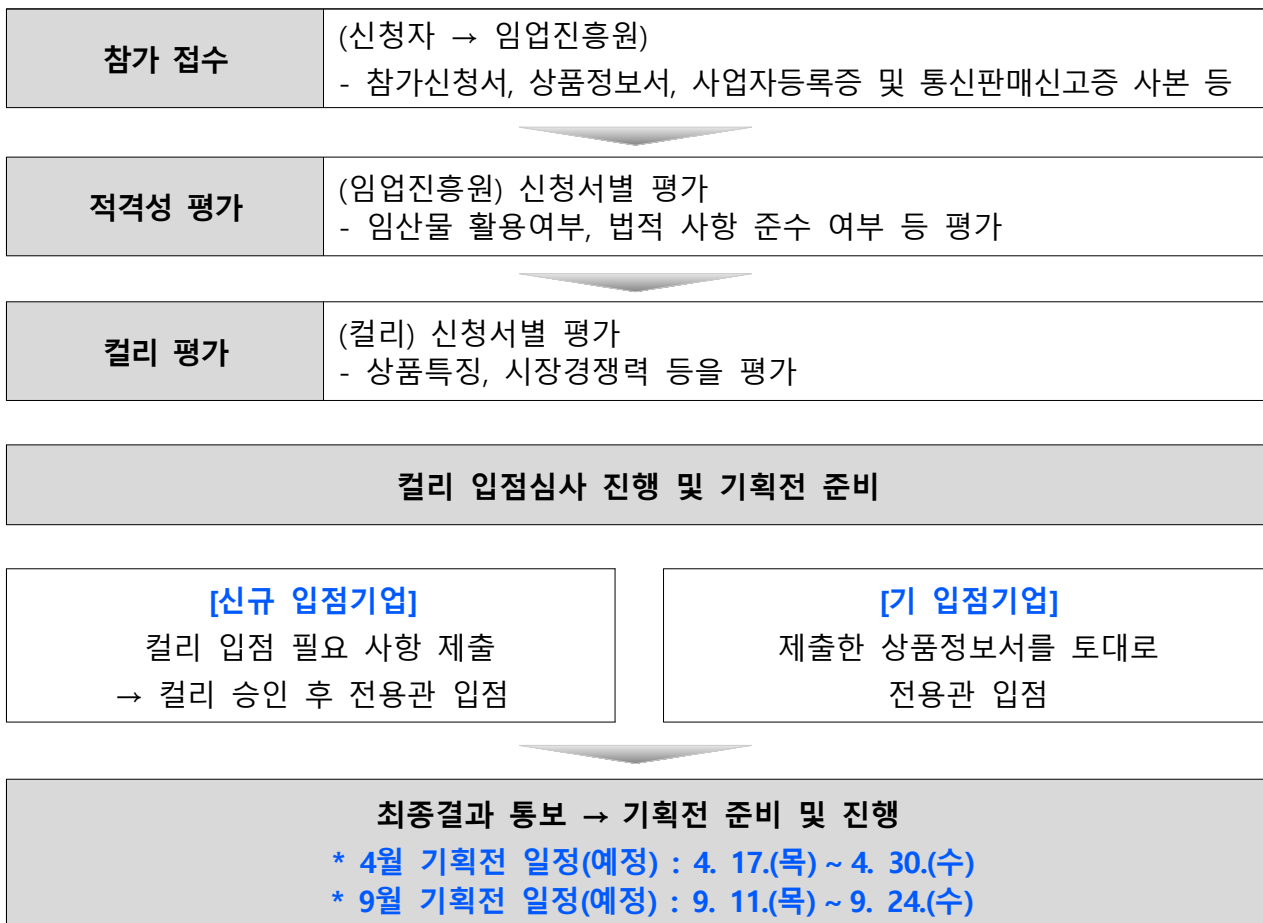
- (평가방법) 한국임업진흥원 적격성 평가 통과 후, 컬리 최종 평가 진행
 - (적격성 평가) 임산물 활용 여부, 법적 사항 준수 여부 등 평가
 - (최종 평가) 상품특징, 시장경쟁력 등을 컬리 측에서 평가
- ※ 컬리 미입점 제품 중 컬리 1차 상품성 검수 통과제품에 대해 최종 평가를 위한 신청상품 택배 혹은 방문 접수 필요

- (결과안내) 선정업체 대상 개별 통보(온라인 및 유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개별 통보가 가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IV 기타 사항

- 심사 전,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일 전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완료 후 향후 1년간 사업 활용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 전체 일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8.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속,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옷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단순처리 농·임산물]

-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냉동하거나, 건조하거나
-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은 정도의 블랜칭(데치기) 등은 단순처리 농·임산물 예) 박피(깎), 슬라이스(절단), 건조, 냉동, 데침 등

참고 2

품질성적서 관련 서류목록

구분	필수 제출서류	비고	면제가능서류
식품 (1차식품*)	1 관련 잔류농약성적서 * 산양삼일 경우, 산양삼 품질검사합격증	필수	· K-FOREST FOOD 지정서 ·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인증서 · GAP 인증서 · 숲푸드 신고증
식품 (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등록·신고증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필수	컬리 기입점업체의 경우 제출 불요
	2 자가품질검사성적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참고하여 기한 내 성적서 제출 * 해당되지 않는 식품유형은 제출 불필요	필수	
	3 품목제조보고서	필수	
기타상품	1 관련 분야 영업등록·신고증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 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신고)증	해당 시	
	2 관련 시험성적서	해당 시	
	3 국산 임산물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 단순건조(건나물, 건버섯 등), 단순절단, 단순세척·탈피 등의 임산물은 1차 식품으로 간주

※ 가공식품 중 과채주스, 김치 등 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인 경우, HACCP인증서 제출 필수

※ 화장품의 경우, 영업등록·신고증,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